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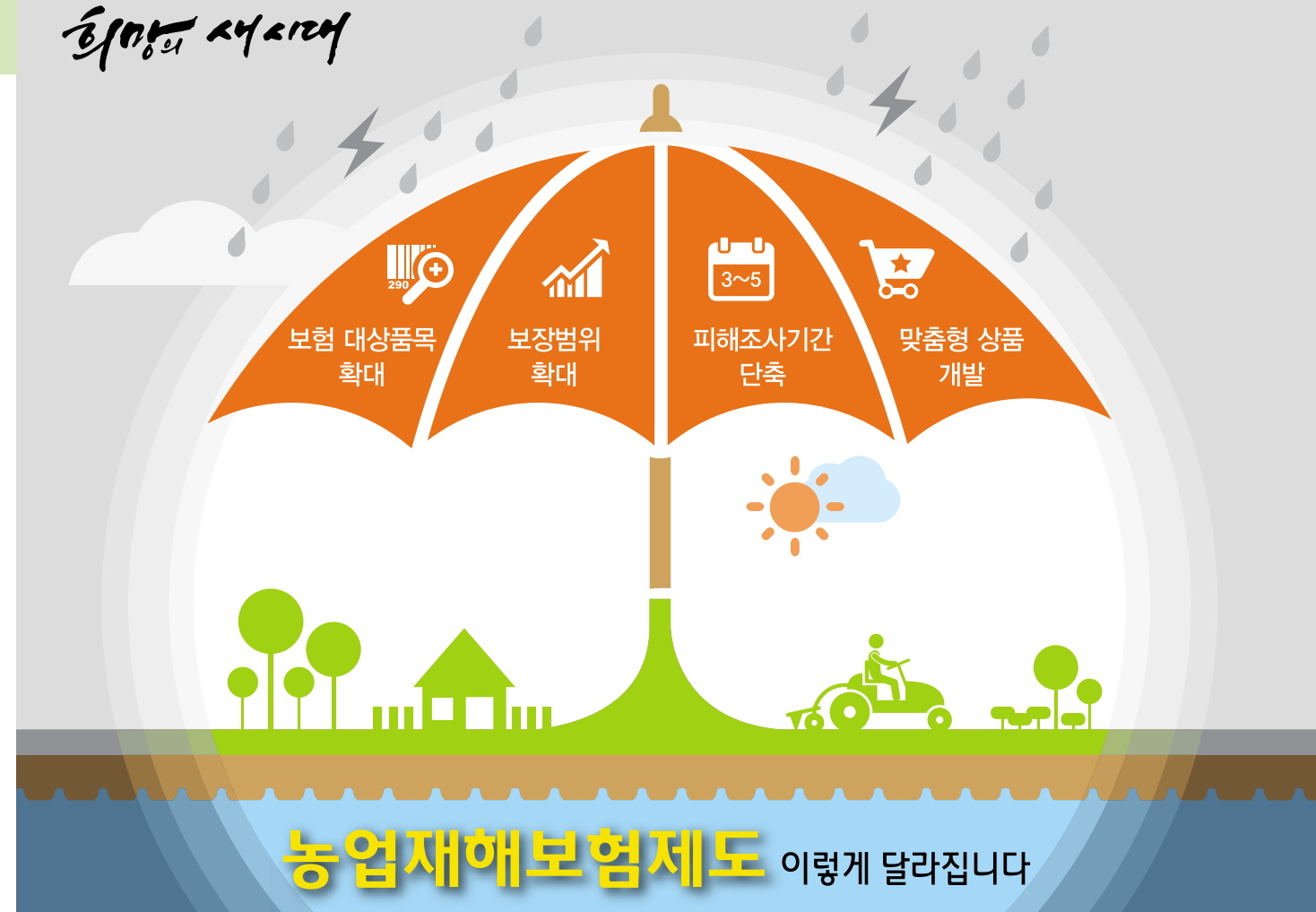
2013년 농작물재해보험 판매시기

■ 본사업

품 목	판 매 시 기	대 상 지 역
사과, 배, 감귤, 단감 뽕은감	2. 28 ~ 3. 22	• 전국
밤, 대추	4. 1 ~ 4. 26	• 전국('12), 전국('13)
고추	4. 15 ~ 5. 24 (지역별 가입시기 제한)	• 4. 15 ~ 5. 10일 : 전남(해남, 영광) • 4. 22 ~ 5. 24일 : 경북(안동, 영양), 충북(괴산, 제천), 전북(고창, 정읍)
벼	4. 29 ~ 5. 31	• 전국('12)
고구마	5. 2 ~ 5. 31	• 전국('12)
옥수수	5. 2 ~ 6. 14	• 전국('12)
감자	5. 13 ~ 6. 7, 9. 2 ~ 10. 11	• 전국 단,봄감자는 강원(평창)
참다래	6. 3 ~ 6. 28	• 전남, 경남, 제주, 광주, 부산, 울산
콩	6. 3 ~ 7. 19	• 전국
시설수박	4. 29 ~ 5. 31 (51개지역신규) 8. 5 ~ 9. 17 ('12년 51개시군 갱신계약만 가입가능) 10. 1 ~ 12. 6 (전국신규)	• 시설작물은 본사업('13) - 단, 9. 17일까지 51개 시군 판매
시설딸기		• 농업시설은 시범사업임
시설오이		• 9. 17일까지 아래지역
시설토마토		• 강원(춘천, 홍천, 철원, 평창), 경기(고양, 평택, 파주, 광주, 포천, 이천), 충북(청원, 진천), 충남(부여, 공주, 논산, 당진, 태안, 예산, 천안), 전북(전주, 고창, 완주), 전남(담양, 순천, 나주, 영암, 곡성, 광양, 보성, 화순), 경북(성주, 예천, 상주, 고령, 군위, 김천, 안동, 칠곡), 경남(밀양, 진주, 김해, 함안, 의령, 창원, 산청, 창녕, 하동, 합천), 부산(강서), 광주(광산, 남구)
시설참외		• 총51(강원4, 경기6, 충북2, 충남7, 전북3, 전남8, 경북8, 경남10, 부산1, 광주2)
시설풋고추		※보장기간 : '13년 판매시 보장기간 : '14. 10. 31
시설호박		
시설국화		
시설장미		
농업시설		
시설파프리카		
시설멜론		
마늘	10. 7 ~ 10. 31(난지형) 11. 1 ~ 11. 29(한지형)	• 전국('12)
인삼	10. 14 ~ 11. 15	• 강원(홍천), 충남(금산), 전북(고창)
오디	10. 14 ~ 11. 8	• 전북(부안)
차	10. 14 ~ 11. 8	• 경남(하동), 전남(보성)
매실	10. 14 ~ 11. 8	• 전국('12)
양파	11. 18 ~ 12. 6	• 전국
복분자	11. 18 ~ 12. 6	• 전북(고창 · 정읍 · 순창), 전남(함평 · 담양)
자두	11. 18 ~ 12. 6	• 전국
포도	11. 18 ~ 12. 6	• 전국
복숭아	11. 18 ~ 12. 6	• 전국
느타리버섯, 표고버섯	10. 1 ~ 11. 8	
시설부추, 시설시금치, 시설상추	10. 1 ~ 12. 6	
계		'13년 40개 작물(본사업 25개, 시범사업 15개)

☎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팀 044-201-1796~7

희망의 새시대



농업재해를 막는 튼튼한 우산이 되겠습니다



전문가가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합니다

손해평가를 담당하는 전문 손해평가인력 육성 / 피해조사기간 3~5일로 단축



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합니다

표준수량 농가별 수확량 차등 방식으로 변경 / 표준 가격을 실제가격으로 반영



보상 범위가 더 넓어졌습니다

2017년 재해보험 대상품목 66개로 확대 / 모든 재해를 보장하는 종합위험보장방식으로 변경



농림축산식품부

농업 재해보험 주요 개편 내용

개편전

개편후

1. 농가실익 제고

①대상품목 확대

• 51개(전국사업 30개)

• '13년 : 56(41)
• '17년 : 66(54)

②보장 방식 확대

• 과수 5개 품목은 특정위험보장
- 태풍·우박·호우 피해만 주계약으로 보장, 동상해 등은 특약 보장

• **모든 재해 보장(종합위험보장)**
- 동해·설해·조수해 등 모든 재해를 주계약으로 보장

③수확량 적용방식 현실화

• 시·군 평균수확량

• **농가별 실제 수확량**

④기준가격 적용방식 현실화

• 일반농산물 가격 일률 적용

• **품질·품위를 반영한 실제 가격**
- 친환경벼(유기벼 120%, 무농약 110%), 흑미벼 115% 높은가격 적용

⑤자기부담 비율 다양화

• 30%형(일부 20, 15%형)

• 10, 15, 20, 30, 40%형

⑥피해조사기간 단축

• 7~10일

• **3~5일 이내**

2. 보험사업 안정화

①보험관리기구

• 없음

• 전담기관 설립

②손해평가 공정화

• 위촉 농업인

• **전문손해평가인력**
(손해평가사 제도 신설)

③손해평가방식 과학화

• 목적

• 피해도감, IT기법 도입
- 동영상, 사진촬영, 3D분석

④국가 책임강화

• 손해율 180% 이상시 지급

• **기준 손해율 하향**
- '13년은 150% 이상시 손실 보전

3. 피해지원 사각지대 최소화

①가구당 지원 한도

• 5천만원

• **5천만원 + 초과분은 융자지원**
(1억원 한도, 1.5%, 5년거치 10년 상환)

②정전 2차 피해

• 없음

• **재해인정 지원**

Q1. 이번에 농업재해보험 개편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취지는?

- ❖ 최근 이상기후 등으로 재해의 빈도·강도가 증가하여 재해에 민감한 농업분야 피해가 급증, 농업인 경영에 위협요인으로 작용
- ❖ 재해보험이 '01년 도입 이후 품목확대, 보험금 지급(12년간 1조4500억원) 등 어느정도 경영안정에 기여하였으나, 대상품목·보장범위의 한정, 피해조사 지연, 손해율 공정성 미흡, 추진체계 미흡 등 문제도 많이 노출
- ❖ 재해피해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, 보험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전면 개편을 추진하게 되었음

Q2. 농업 재해보험 대상품목을 '17년까지 66개로 확대한다고 하였는데, 년차별 도입 계획은?

- ❖ 현장에서 보험 수요가 높은 품목, 재해가 많은 품목 및 보험 운영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품목을 중심으로 연차적으로 도입할 계획임
- ▶ 농작물 : ('13) 40개 → ('14) 43 → ('15) 46 → ('16) 48 → ('17) 50, 가축 : ('13~'17) 16개

Q3. 농업 재해보험의 보상범위를 모든 재해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확대하는 것과 관련하여, 현재 보상범위와 개편방향은?

- ❖ 과수 5개 품목의 보장방식에 대해서는 현장 요구를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과수형 종합위험 보장방식으로 전환해 나갈 예정임
- ** 사과·배·감귤·단감·뽕은감 : (현재) 태풍·우박·호우 피해만 주계약으로 보장 ⇒ (개편) 동해(凍害)·설해(雪害)·조수해(鳥獸害) 등 모든 재해를 주계약으로 보장

Q4. 보험가입의 기준이 되는 표준수확량과 표준가격의 현재 적용 방식과 개편방향은 무엇이며, 그 효과는?

- ❖ 현재, 표준수확량은 현재의 시·군별 평균수확 적용방식에서 농가별 수확량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고
- ❖ 표준가격은 일반 농산물 가격에서 품위나 품질이 반영된 실제 가격으로 차등화

Q5. 현재 보험료의 50%를 국고로 지원하고 있는 비율을 차등화해 나간다고 하는데, 구체적인 방법은?

- ❖ 해외사례나 타 보험 사례와 같이 재해의 위험도나 농어가 소득 규모 등에 따라 국고지원을 차등화하는 것이 보험사업의 형평성 및 재정의 효율적 집행 차원에서 필요함
- ** 예시 : (현행) 동일하게 보험료의 50% 지원 ⇒ (개편) 자기부담비율 10%시 국고지원율 40%, 20%(50%), 30%(60%)